

변경 대비 표(일반 및 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매입기준가 적용일 변경	환매기준가 적용일 변경	법령 개정
1	미래에셋 PanAsia 컨슈머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○	주 2)	○
2	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투자신탁1호(H-JPY)(주식)	○	주2)	○
3	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투자신탁1호(UH)(주식)	○	주2)	○
4	미래에셋다이와연금넥스트AP증권투자신탁(주식)	○	주2)	○
5	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투자신탁1호(H)(주식)	○	주2)	○
6	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투자신탁1호(UH)(주식)	○	주2)	○
7	미래에셋디스크버리증권투자신탁G1호(주식)	○	주1)	○
8	미래에셋베트남&차이나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-	○
9	미래에셋베트남고배당IPO증권투자신탁(H-USD)(주식-파생형)	○	-	○
10	미래에셋베트남고배당IPO증권투자신탁(UH)(주식)	○	-	○
11	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신탁1호(H-USD)(주식-파생형)	○	-	○
12	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신탁1호(UH)(주식)	○	-	○
13	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1호(주식혼합)	○	-	○
14	미래에셋변액보험베트남증권투자신탁(H-USD)(주식-파생형)	○	-	○
15	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투자신탁G1호(주식)	○	주1)	○
16	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주2)	○
17	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스타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주2)	○
18	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-	○
19	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주2)	○
20	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컨슈머어드벤처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주2)	○
21	미래에셋연금PanAsia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주2)	○
22	미래에셋연금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주2)	○
23	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주2)	○
24	미래에셋연금인디아인프라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주2)	○
25	미래에셋연금인사이트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○	-	○
26	미래에셋연금중국본토증권투자신탁1호(주식-재간접형)	○	주2)	○
27	미래에셋연금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○	주2)	○
28	미래에셋연금차이나인프라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주2)	○
29	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증권투자신탁G1호(주식)	○	주2)	○
30	미래에셋우리아이세계로직립식증권투자신탁K-1호(주식)	○	주2)	○
31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G1호(주식)	○	주1)	○
32	미래에셋재팬인텍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-파생형)	○	주2)	○

33	미래에셋차이나A레버리지1.5증권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	○	주1)	○
34	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.5증권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	○	주1)	○
35	미래에셋차이나H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주2)	○
36	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주2)	○
37	미래에셋차이나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주2)	○
38	미래에셋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○	주2)	○
39	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탁1호(H)(주식)	○	주2)	○
40	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탁1호(UH)(주식)	○	주2)	○
41	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탁2호(H)(주식)	○	주2)	○
42	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탁2호(UH)(주식)	○	주2)	○
43	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주2)	○
44	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2호(주식)	○	주2)	○
45	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3호(주식)	○	주2)	○
46	미래에셋차이나심천1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-파생형)	○	주2)	○
47	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	○	-	○
48	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주2)	○
49	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주2)	○
50	미래에셋차이나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주2)	○
51	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3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○	주2)	○
52	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3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○	주2)	○
53	미래에셋코친디아셀렉트Q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주2)	○
54	미래에셋퇴직연금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주2)	○
55	미래에셋퇴직플랜G1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○	주2)	○
56	미래에셋퇴직플랜G2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○	주2)	○
57	미래에셋퇴직플랜G3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○	주2)	○
58	미래에셋퇴직플랜G4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○	주2)	○
59	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주2)	○
60	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○	주2)	○
61	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○	주2)	○
62	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2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○	주2)	○
63	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4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○	주2)	○
64	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주2)	○
65	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○	주2)	○
66	미래에셋퇴직플랜중국본토4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○	주2)	○

2. 변경 사항:

1) 매입 기준가 적용일 변경

- 2) 환매 기준가 적용일 변경
- 3)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3. 효력발생예정일: 2020년 10월 5일(월)
- 4. 변경 내용:
 - 1) 매입 기준가 적용일 변경

[집합투자규약]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24조(판매 가격)	<p>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(단, 토요일은 제외한다)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	<p>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(단, 토요일은 제외한다)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

[투자설명서]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11. 가. 매입	<p>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납입일의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</p> <p>(나)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</p>	<p>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납입일의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</p> <p>(나)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납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</p>

2) 환매 기준가 적용일 변경

[집합투자규약]

주1)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26조(환매 가격 및 환매방법)	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 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	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 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

주2)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26조(환매 가격 및 환매방법)	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 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	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 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

[투자설명서]

주1)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11. 나. 환매	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(가)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(나)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	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(가)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(나)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

주2)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제2부. 11. 나. 환매	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(가)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(나)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	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(가)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(나)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

3)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구분	정정 전	정정 후
제 44 조 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① <u>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u>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~3 <생략>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~6 <생략> <u><신설></u>	① <u>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u>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~3 <좌동>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~6 <좌동> ④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u>